

2024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4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덕특구 내 지역 현안·사회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분야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
- 사업내용
 - 대전시 특화 사회문제 분야에 대한 현장적용·검증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사업화를 촉진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700백만원* 이내
* 상기 예산은 '24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전체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총 4개 과제 이내 (과제당 180백만원 내외)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해결형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는 대전시 소재** 기업(공동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아래 "신청분야"에서 제시한 사회문제 분야에 대해 자유 제안 가능
** 대전시 소재 기업은 분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전시에 소재한 국내 법인에 한하며, 사업자 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대전 소재여부 증빙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 가. 국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중된 분단도 포함

신청분야

사업구분	주관기관												
대전 특화 사회문제 해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아래 대전 특화 사회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기술사업화 과제 추진이 가능한 대전시 소재기업 -<신청서류_사회문제해결 개요서>를 참고하여 대전 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 내용, 방법 등 제안(개요서의 문제해결 예시는 참고용으로, 자유롭게 보완/수정하여 제안 가능) -사회문제 분야 중 1개 분야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li style="text-align: center;"><대전 특화 사회문제> *「'24년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확산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대전 특화 사회문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70%;">대전 특화 사회문제</th> </tr> </thead> <tbody> <tr> <td>주거교통 (교통안전)</td> <td>어린이 보호구역 여전한 위험'스쿨존'</td> </tr> <tr> <td>가족 (고령화)</td> <td>대전의 가파른 고령화 속도, 노인건강관리</td> </tr> <tr> <td>사회통합 (취약계층 생활불편)</td> <td>실종고위험군에 대한 실종 예방 및 조기대응</td> </tr> <tr> <td>환경 (공기오염)</td> <td>주민 민원 폭증 하천 및 주거 지역 악취</td> </tr> <tr> <td>사회통합 (취약계층 생활불편)</td> <td>지하철 역사 내 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엘리베이터 이동권</td> </tr> </tbody> </table>	구분	대전 특화 사회문제	주거교통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여전한 위험'스쿨존'	가족 (고령화)	대전의 가파른 고령화 속도, 노인건강관리	사회통합 (취약계층 생활불편)	실종고위험군에 대한 실종 예방 및 조기대응	환경 (공기오염)	주민 민원 폭증 하천 및 주거 지역 악취	사회통합 (취약계층 생활불편)	지하철 역사 내 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엘리베이터 이동권
	구분	대전 특화 사회문제											
	주거교통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여전한 위험'스쿨존'											
	가족 (고령화)	대전의 가파른 고령화 속도, 노인건강관리											
	사회통합 (취약계층 생활불편)	실종고위험군에 대한 실종 예방 및 조기대응											
환경 (공기오염)	주민 민원 폭증 하천 및 주거 지역 악취												
사회통합 (취약계층 생활불편)	지하철 역사 내 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엘리베이터 이동권												
※ (공동사항)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협약 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아래 사회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기술사업화 과제 추진**이 가능한 대전시 소재기업
- <NTIS 사회문제해결플랫폼-사회문제 정의(<https://www.ntis.go.kr/scisoplatform/report.do>)를 참고하여 과학 기술 활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내용, 방법 등 제안(개요서의 문제해결 예시는 참고용으로, 자유롭게 보완/수정하여 제안 가능)
- 사회문제 분야 중 1개 분야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 * 「제3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종합계획(23.2.22)」中 10대 분야 43개 사회문제

10대 분야	43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생활소음,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보이스 피싱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고령화, 가정폭력, 저출산(저출생), 1인 가구 소외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디지털 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일자리 부족, 사회 양극화 및 갈등

※ (공통사항)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 사항이 증명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내용

- 대전시 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현장적용·검증 등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

중소기업 ¹⁾	중견기업 ²⁾		공기업 ³⁾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⁴⁾ ,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³⁾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⁴⁾ ,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음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협약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신규인력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면,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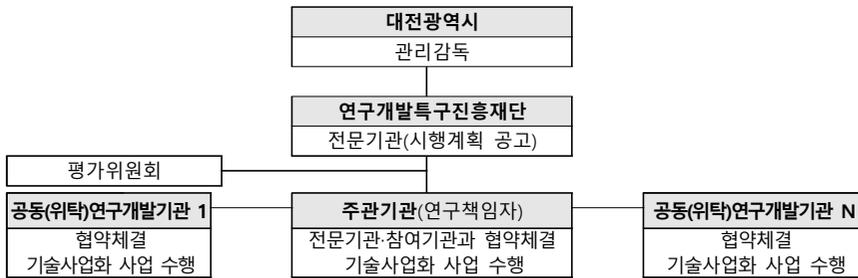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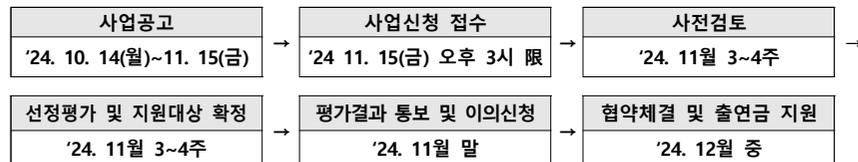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 활용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25
	• 활용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25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25
	• 주관기관의 활용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회적 가치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적정성	2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선정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의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의 대상으로 함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에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함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상황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4. 10. 14(월) ~ 11. 15(금) 15:00까지(PMS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사업계획서 매뉴얼에 따라 전자파일(PDF, HWP) 등의 양식으로 PMS 업로드
 -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 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및 양식 교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및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	○	○	PDF
3(필수)	사업자등록증 ※ (해당기업)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내전 소재여부 추가증빙 제출	-	○	○	○	PDF
4(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	PDF
5(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	○	○	PDF
6(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	○	-	-	PDF
7(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	○	PDF
8(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	○	○	PDF
9(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	○	○	PDF
10(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 기준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	PDF
11(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	PDF
12(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¹⁾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	PDF
13(필수)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²⁾	-	○	-	-	PDF
14(필수)	특허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 ³⁾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기술이전(출자) 대상기술에 한함	-	○	-	-	PDF
15(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7호	○	-	-	PDF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8호	해당시	-	-	PDF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7	전문연구사업자 준비(원본대주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8 (필수)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9호	○	-	-	PDF
19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호	○	○	○	엑셀(Excel)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추진절차상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해당 사유를 알려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확인서 발급사이트: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 담당자 : 김주은 연구원(042-865-8975, kjun0229@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